

한국의 경쟁정책이 경제성장·발전에 미친 영향과 시사점

허 선

공정위 정책국장

I. 경쟁정책과 경제발전¹⁾

공정거래위원회는 1981년에 공정거래법이 도입된 이후 20여년간 우리나라에 시장경제질서를 정착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다. 경쟁법·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담당한 국가기관으로서 공정위는 여러 가지 저항과 난관을 극복하고 경제발전과정에서 불완전한 경쟁으로 인한 시장실패(market failure)의 요인들에 개입하여 우리 경제의 발전과정에 큰 영향을 미쳐왔다. 본고의 목적은 경쟁정책이 지난 20여년간 우리나라의 경제발전 과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쳐왔는지를 분석해 볼²⁾으로써, 국가경제의 핵심적 운영기제로서 경쟁정책의 중요성을 되새김과 아울러 우리보다 경쟁정책 운용 역사가 짧은 다른 개발도상국들이 우리의 경험으로부터 참고할 만한 시사점을 찾아보려는 것이다.

시장경제체제에서 국가들이 경쟁정책을 시행

하는 목적은 경쟁을 조장하여 경제의 효율성과 소비자의 후생을 증대시킴으로써 건전한 시장경제를 달성하려는 것이다.²⁾ 경쟁은 시장경제에서 협약과 같은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건전한 시장경제의 발전을 위해서는 경쟁을 조장하고 감시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게 된다. 1990년대 이후에 사회주의 경제권이 붕괴되고 세계경제가 하나로 통합되는 세계화가 급진전됨에 따라, 많은 개발도상국들과 체제전환국들이 앞다투어 경쟁정책을 도입하고 있고 선진국들도 기존의 경쟁정책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이런 추세를 통해 우리는 가까운 미래에 경쟁정책이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지속적 경제발전을 추구하는 국가들의 핵심적 정책수단이 될 것임을 확신할 수 있다.

국가들이 경쟁정책을 도입하여 법집행을 강화하고 있는 배경에는 경쟁과 경쟁정책이 경제발전에 중대한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믿음이 깔

1) 경제발전(economic development)이라 함은 한 나라가 가지고 있는 내적 잠재력이 점진적으로 드러나서 국민의 삶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경제적 진보의 과정이다. 좁게는 GDP 또는 1인당 GDP의 증가, 즉 양적 측면의 국민경제능력의 증가(이를 경제성장이라 한다)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넓게는 국민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는 모든 양적·질적 조건의 개선을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된다.

2)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은 제1조에서 "이 법은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려있다. 기업간의 치열한 경쟁이 효율성 향상과 사회적 후생증대를 통해 경제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경제학 이론이나 실증적 연구결과를 통해 타당성이 어느 정도 입증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경쟁정책이 경제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는 두드러진 실증연구 결과들을 찾아보기 힘들다.³⁾ 이론적으로는 경쟁정책이 경쟁을 촉진하는 만큼 경제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추정하는 데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 그러나 실증적인 연구를 통해 이를 입증하는 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첫째로 경쟁정책뿐만 아니라 무역 및 투자자유화, 규제개혁, 민영화 등도 경쟁촉진을 통해 경제발전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인데, 이들 변수들은 상호 복잡하게 연관되어 있어서 명확히 구분하는 것조차 쉽지 않다. 많은 나라들이 아직 경쟁정책을 시행한 역사가 길지 않다는 사실도 시계열 분석을 통해 경제발전과의 관계를 입증하는 것을 어렵게 한다. 마지막으로 한 나라의 경쟁정책 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적절한 변수를 발견하기가 힘들다는 것도 이 분야의 실증연구를 어렵게 하는 요소라고 할 수 있다.⁴⁾ 이 같은 상황에서 경제개발의 성공적 사례로 알려져 있는 한국에서 경쟁정책이 그간의 경제성장과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쳐왔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큰 의미가 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다음 장에서는 한국의 경제발전 과정을 경쟁의 관점에서 크게 세 단계로 나누어 과거 경제개발 정책의 성과와 문제점을 진단하고, 시장경제의 발달을 위한 경쟁정책적 대응과 공정거래법의 발달 경로에 대해 살펴본다. 그 다음 장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20여년의 경쟁정책 집행을 통해 한국의 경제발전과 소비자후생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한 후, 결론 부분에서는 한국의 경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몇 가지 교훈들에 대해 논의한다.

II. 한국경제의 발전과정과 경쟁정책의 형성 및 전개과정

1. 정부주도의 경제운용: 196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1) 정부주도에 의한 고도 경제성장의 명암

1960년대와 1970년대를 거치면서 우리 정부는 수출진흥을 통한 경제개발을 목적으로 각종 금융 및 세계 지원을 통하여 수출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불균형 성장전략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20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GDP가 약 30배(61년 \$21억→'79년 \$616억), 1인당 GDP가 약 20배(61년 \$82→'79년 \$1,647)나

3) Porter(2000)의 실증분석 결과는 두드러진 결과를 보여주는 유일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Michael Porter 교수는 세계경쟁력보고서를 통해 발표한 연구에서, 여러 가지 미시경제변수들과 경제성장간의 관계에 대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경쟁정책의 효과성(effectiveness of antitrust policy)이 선진국 그룹과 후진국 그룹을 막론하고 국가의 1인당 GDP 수준과 강한 정(positive)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혔다.

4) 경쟁정책의 강도를 나타낼 수 있는 변수로서 경쟁당국의 법집행 건수, 벌금부과 앤수, 직원의 수, 예산의 크기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들은 모두 경쟁정책의 정도를 나타내기에 충분하지 않다. Dutz and Hayri(1999)는 경쟁정책의 정도에 대해 기업인들에게 직접 질문을 하여 그에 대한 대답을 접수화한 수치를 경쟁정책의 효과성을 나타내는 변수로 활용하여 국가간 횡단면 분석을 시도하였는데, 이것은 그만큼 객관적인 변수를 찾기가 힘들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각주 1)에서 언급한 Porter(2000)의 분석에서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경쟁정책의 효과성을 측정했다.

증가하는 놀라운 경제성장을 거두었다.

이러한 정부주도의 불균형 성장전략은 시장이 협소하고 자본과 기술력이 부족했던 당시의 경제적 여건을 고려할 때 어느 정도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경쟁'이라는 관점에서 이 시기를 진단해 본다면, 대내외적 경쟁이 제한된 채 정부의 간섭과 보호에 의해 경제가 운영되던 시기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달리 말하면 시장기구가 정부개입에 의해 대체되는 경우가 많았던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 1960년대에는 정부가 비차별적으로 수출실적에 따라 산업이나 기업을 지원하였기 때문에 정부 개입이 경쟁에 대해 비교적 중립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1970년대 초부터는 정부가 전략산업을 선정하고 특정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전략을 선택함으로써 정부개입이 시장을 심히 왜곡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이미 경제 곳곳에 의도하지 않은 구조적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었다. 경쟁의 부재는 시장기능을 왜곡시켰고 독과점 시장구조가 정착되고 있었으며, 소수의 재벌들의 손에 경제력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현상이 우리 경제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었다. 이러한 구조적 비효율성에도 불구하고 고도 경제성장이 가능했던 것은 GATT 체제하에서 선진국들이 자유무역을 실시하면서 개발도상국들의 보호주의를 널리 무인하였던 당시의 국제 경제상황이 우리에게 유리하게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2) 경쟁법 도입 시도와 좌절

이 시기에도 우리 경제에 경쟁원리를 도입하기

위한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1963년 이른바 '삼분사건(三粉事件)'⁵⁾으로 정치·사회적으로 독과점의 폐해를 규제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면서 공정거래법 제정에 대한 논의가 처음으로 시작되었다. 이후에도 이러한 독과점 문제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면서 1966년, 1969년 그리고 1971년에 공정거래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바 있다. 그러나 당시에는 경쟁정책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였으며, 기업자본의 축적과 재화공급의 촉진이 우리경제의 당면 과제라고 주장하는 업계의 반발로 인해 이러한 시도는 번번이 좌절되고 말았다.

다만, 1975년에 공정거래법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물가안정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 제정되었다. 1970년대 초부터 원자재 수입가격인상과 환율인상 등으로 물가불안이 지속되어 국민경제를 어렵게 만들고 있었다. 이에 정부는 물가를 탄력적으로 통제하려는 목적으로 '물가안정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을 제정하였다. 이 법은 물가안정과 공정거래질서 유지라는 이질적인 두 가지 기능을 동시에 규정하고 있었으나, 실제로는 공정거래보다 물가안정에 역점을 두었다. 독과점에 대한 규정을 두었으나 독과점의 형성에 대한 규제가 아니라 독과점의 폐해를 규제하는 입장은 취하였으며, 사업자의 공동행위를 금지하면서도 규정이 미비하여 공동행위를 실제로 규제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 법은 우리 경제가 1970년대 후반에 경기과열과 제2차 오일쇼크를 겪는 과정에서 물가안정과 공정거래 그 어느 목적도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말았다.

결국 1970년대 말에 이르자 중화학공업의 무

5) 1960년대초 물자부족시기에 밀가루, 설탕, 시멘트를 생산하던 독과점 업체들이 만성적인 공급부족상황을 이용하여 고시가격의 3~4배에 이르는 가격조작과 세금포탈로 폭리를 취한 사건

분별한 육성정책으로 인해 비효율적인 과잉투자 현상이 심화되었고 오일쇼크와 국내의 정치적 불안이 겹쳐서 1980년대초 경기침체가 초래되고 말았다.⁶⁾ 이때의 경기침체는 경기순환과는 무관한 것으로서 그간에 압축성장과정에서 누적된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가 그 근본원인이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법체계의 명확성과 제도운영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1980년에 진정한 의미의 경쟁법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

2 경쟁원리의 확산 노력과 경제위기: 1981년부터 1997년까지

1) 경제정책기조의 전환과 공정거래법의 도입 및 의의

1960년대와 70년대를 거치며 정부주도로 이루어진 양적 성장위주의 전략은 우리 경제를 정치에 종속시켰으며, 정경유착과 계층간·지역간 소득불균형, 독과점의 폐해와 같은 구조적인 문제점들을 야기하였다. 1980년대로 접어들면서 전세계적으로 규제완화와 대외개방정책이 추진되었는데, 우리나라도 80년대초부터 자율, 안정, 개방이라는 3대 가치아래 과거 정부주도의 양적 성장위주의 정책기조로부터의 전환을 시도하기에 이르렀다. 자율은 국내시장의 경쟁촉진을 의미하고 개방은 해외로부터 경쟁을 도입한다는 의미였기 때문에 이때부터 비로소 '경쟁'이라는 요소가 우리나라의 경제운영의 중심개념으로 자리잡기 시작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하에서 1980년 12월에 업계의 강한 반대를 무릅쓰고 마침내 우리나라의 기본 경쟁법인 '독점금지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이하 공정거래법)⁷⁾이 제정되었으며, 이듬해 4월부터 시행되었다. 공정거래법은 과거 정부주도로 운용되어 왔던 우리 경제를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기 위하여 만들어졌다. 이것은 단순한 제도의 도입이 아니라 경제운영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며 우리 정부가 시장경제 이데올로기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었다. 그 이전에도 양적 고도성장전략에서 빚어진 폐해와 시장기능의 마비로 인한 부작용을 치유하기 위해 경쟁법 도입이 여러 차례 시도되었으나 앞서 말한 대로 이러한 노력은 번번이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그러나 경제규모가 확대되고 경제구조가 점차 복잡해짐에 따라 정부개입의 비효율성이 뚜렷하게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경제의 성장과 더불어 심화된 독과점화는 내부적인 경제체질을 허약하게 하여 국제경쟁력이 날로 약화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공정거래법이 도입된 것은 그 이후 우리 경제가 꾸준한 발전을 계속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획기적인 변화로서 그 의의가 매우 크다. 지난날의 경제운용방식에 대한 반성과 함께 시장기능의 회복을 선언한 것이었으며, 독과점의 심화로 허약해진 경제체질을 과감하게 일신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980년대초에 이루어진 경제정책 기조의 전환은 이후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1982년부터는 과거에 국민들의 생활을 힘겹게 만들었던 물가불안이 안정되기 시작하여 지금까지 매년 한자리수 물가상승률이 유지되고 있다. 1986년부터 1989년까지는 3저현상에 힘입어 최초로 경상수지의흑자를 기록하였으며, 1981년부터 1991년까지 연평균 GDP성장을

6) 1980년도의 GDP성장률은 -2.1%를 기록했다.

8.7%라는 고도성장을 달성하였다.

2) 경쟁정책의 진화

1981년에 공정거래법이 시행된 이후 우리나라의 경쟁정책은 시장의 상황과 경제발전 단계에 따라 제도의 내용과 정책의 우선순위가 변화되어 왔으며, 집행 당국인 공정위의 조직과 인력도 꾸준히 보강⁷⁾되면서 그 위상이 강화되어 왔다.

중소기업에 대한 보호장치를 강화하기 위하여 종래 공정거래법의 한 조문으로 운영되던 것을 별도의 법률로 발전시킨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을 제정하였으며, 1986년에는 불공정약관으로 인한 소비자 대규모 피해를 예방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으로 '약관의 규제에관한법률'을 신설하였다.

1986년 말에는 경제력집중억제제도가 공정거래법에 도입되면서 재벌의 경제력집중 현상의 시정을 위한 돌파구가 마련되었다. 과거에 재벌이 우리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한 것이 사실이었으나, 1980년대부터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재벌은 경쟁원리의 확산과 사회적 형평을 저해하는 장애물로 전락하였다. 과거 정부의 선별적 지원에 의해 탄생한 재벌들은 상호출자와 같은 부당한 자본증식방식을 통해 경제력을 날로 확대해가며 독과점적 시장구조를 악화시키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과 대응책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공정거래법의 개정을 통해 정책

적 수단을 강구하게 된 것이다. 1987년부터 시행된 경제력집중억제제도는 재벌로 하여금 무리한 기업확장보다는 내실있는 성장에 주력하게 함으로써 과도한 경제력집중을 억제하고 국민경제의 활력을 제고하여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서 우리나라 경쟁정책의 독특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1988년부터 공정위는 정부 최초로 규제완화의 가치를 내걸고 18개 산업의 규제완화작업을 추진하였다. 그 때부터 정부에 의한 직접적인 가격통제나 진입제한적 규제들을 폐지하고 시장이 스스로의 노력으로 역동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공정위의 규제개혁 노력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와 같이 공정거래법이 제정된 이후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상이 꾸준히 높아지고 기능이 확대·강화되어 온 것은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이 산업에 대한 보호, 지원, 규제보다는 자율과 경쟁에 더 비중을 두는 방향으로 꾸준히 바뀌어왔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3) 경제환경의 변화와 금융위기

1990년대 들어서면서 대내외적 경제환경이 과거와 다르게 변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와 기업들은 과거의 성장패러다임에 안주한 나머지 구조개혁의 기회를 놓치므로 말미암아 1997년의 외환위기를 자초하고 말았다.

1990년대 들어 해외시장의 수요증가가 정체

7) 공정거래법 제정당시에 경제기획원내에 직원 75명의 실(室)단위로 출범하였던 공정거래위원회는 이후에 여러 차례 법개정을 통해 꾸준히 조직이 확대되고 권한도 강화되었다. 1990년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협의제 독립행정기관으로 새롭게 탄생하였다(직원 수 221명). 종래 경제기획원장관이 수행하던 공정거래법 운용을 공정거래위원장이 독립적으로 관掌하게 되었으며, 지방사무소도 이때에 개설되었다. 1995년에는 경제기획원이 해체되면서 중앙행정기관으로 독립되었고 1996년에는 장관급 기관으로 격상되면서 역할이 더욱 강화되었다(직원수 381명).

기에 접어든 반면에 많은 후발개도국들이 해외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의 경쟁상대로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또 대내적으로는 임금수준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수출가격경쟁력이 크게 저하되었다. 이런 가운데 세계경제의 통합화와 국경없는 경쟁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전개되기 시작하면서 우리 기업들은 세계시장에서 보다 치열한 경쟁에 직면하게 되었다. 1990년대 중반부터는 WTO체제가 출범하고 우리나라가 OECD에 가입함으로써 개방화·세계화 현상이 한층 고조되어 기업들은 세계시장에서 더욱 치열한 경쟁에 직면하게 되었고 우리 경제에 경쟁지향적인 구조개혁의 필요성도 점점 더 커지고 있었다.

이런 가운데 과거 정부로부터의 지원과 보호에 의지하여 성장해온 우리 기업들은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점차 상실해가고 있었다. 우리나라의 재벌들은 이러한 환경변화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과거에 성공을 보장해 주었던 성장전략, 즉 외부차입에 의해 생산요소의 투입을 늘림으로써 사업을 다각화하는 방식을 고수하고 있었다. 그때까지 공정위는 상호출자금지와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통해 재벌의 구조와 행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으나 대기업들의 활동을 보다 포괄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통제매커니즘이 부재한 가운데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었다. 정부는 규제완화와 시장개방조치를 통해 구조적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시도하였으나, 오랜 기간동안 고착화된 정부의 규제와 보호를 통한 관치경제체제가 사라지지 않고 있었다. 이런 가운데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와

비효율성은 개선되지 못하였고, 우리의 핵심 산업들도 국제경쟁력을 점점 상실해 가고 있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경쟁의 원칙에 기반한 우리 경제의 구조개혁 필요성을 일찍부터 주장하고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으나 우리 정부의 시책과 기업들의 행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데에는 실패하고 말았다. 그 예로서 공정위는 1996년에 30대 재벌에 대해 계열사간 상호채무보증을 금지하고자 시도하였으나 재계와 관계부처의 반대에 부딪혀 좌절되고 말았다.⁸⁾ 공정위가 출범 이후부터 기능과 위상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고 우리 경제의 전반에 경쟁원리를 확산시키는 데에 일정한 성과를 거두기는 하였으나, 경제운용의 방향을 좌우할 수 있을 만한 권한과 자원을 보유하지는 못했던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1997년 경제위기의 근본 원인을 시장경쟁시스템의 취약이라는 구조적인 문제에서 찾을 수 있다고 해서 그때까지의 경쟁정책 운용 성과가 보잘것없는 것이었다고 결론 내릴 수는 없다. 외환위기가 발생하기 전 1990년대의 우리 경제를 경쟁의 관점에서 보면, 생산요소와 기업경영권 시장에 있어서의 경쟁은 크게 미흡한 수준이었으나, 상품시장에서는 경쟁원리가 어느 정도 자리잡아가고 있었다. 만일 우리가 경제위기 이후 구조조정과정에서 경제의 전반에서 경쟁원리가 빠른 속도로 정착되고 있다고 평가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이전까지 공정거래법 집행노력을 통해 우리 경제의 전반에 심어져 있던 경쟁마인드가 지금 결실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8) 채무보증제한제도는 1992년 공정거래법 제3차 개정시에 도입되었으며, 당시 자기자본의 200% 이내로 제한하였던 것을 1996년 제5차 개정시에 100%로 하향 조정하였다. 재벌의 계열사간 채무보증은 외환위기와 함께 IMF라는 외부의 힘을 떨어 완전히 금지되게 됨으로써 뒤늦게 해결되었다.

3. 성숙한 시장경제를 향하여: 1998년부터 현재까지

1) 구조개혁과 강화된 경쟁법 집행활동

1997년의 경제위기를 맞아 시장경쟁원리가 경제의 실질적인 운영원리가 되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지금까지 우리 정부는 기업, 금융, 노동, 공공 등 4대 부문의 개혁을 추진해왔다. 그 결과 과거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고착되어온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부실을 상당부분 털어 내고 어느 정도 시장경제의 기틀이 마련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먼저 기업구조조정의 경우, 소액주주권 강화, 사외이사제 도입, 회계기준 강화 등을 통해 지배구조와 투명성이 개선되었고, 재벌의 상호채무보증이 완전 해소되고 재무구조가 개선되었으며, 채권단 중심의 상시 구조조정시스템이 마련되어 대미불사의 신화가 퇴조되고 있다. 금융기관의 경우 대규모의 공적자금 투입을 통해 건전성과 수익성이 향상되었고 감독기능도 선진화되었다. 공공부문의 경우 인원감축과 꾸준한 민영화를 통해 효율성이 증진되고 있으며, 노동문제에 있어서도 그간 제도개선을 통해 노동시장의 유동성이 개선되고

있으며 법과 원칙에 따른 상생의 노사문화가 확산되고 있다.

공정위는 이 과정에서 기업구조개혁의 한 축을 맡아 경제력집중억제시책을 강화함으로써 재벌 계열사간의 다양한 연계를 단절하고 독립경영체제가 자리잡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⁹⁾ 또 한 이 기간동안 부당공동행위와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를 중심으로 법집행이 대폭 강화되었으며,¹⁰⁾ 규제개혁이나 공기업민영화과정에 참여하여 시장에 경쟁을 확보하는 경쟁주창활동도 활발히 전개함으로써 시장경제시스템의 정착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2) 개혁의 성과와 남은 과제

그 동안의 개혁작업으로 우리나라는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국제사회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었다. 1999년부터는 안정된 물가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높은 경제성장률과 대규모의 경상수지 흑자를 시현하였다. 작년 8월에 당초 계획보다 3년이나 앞서 IMF자금을 완전 상환하였으며, 외환위기 당시에 40억불에 불과했던 외환보유고도 금년들어 1000억불이 넘는 수준을 유지하며 세계 5위의 외환보유국이 되

9) 1998년에는 재벌 계열사들간의 34조원에 달하던 상호채무보증을 완전 해소하고 이를 금지시킴으로써 계열사들의 동반부실화의 가능성을 차단하였다. 또한, 계열사간의 부당내부거래를 집중적으로 적발하여 30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함으로써 계열사들의 독립경영을 정착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10) 부당공동행위(카르텔)에 대한 원칙적 금지 및 과징금 부과규정은 1986년 법개정시 도입되었으나, 이때부터 2001년까지 부당공동행위에 대해 내려진 시정명령(204건)의 62%(128건), 그리고 과징금 총액(3,144억원)의 93%가 위기 이후에 부과된 것이다.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의 경우에도 연간 20건 내외에 머물던 시정명령이 1998년부터는 70건을 넘고 있으며, 과거에 전무하던 과징금 부과도 빈번해지고 있다. 한편 전반적인 공정거래법 집행추이를 보면, 법시행 초기에는 집행이 미약하였으나 1990년대 초부터 법집행이 강화되기 시작하였고 경제위기 이후에는 강화추세가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1990년대에 들어와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고발조치 등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1998년부터는 특히 시정명령과 과징금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경제위기 이전에 연간 시정명령 전수와 과징금의 최고치는 1996년의 250건과 162억여원이었는데, 1998년에는 그 두배가 넘는 시정명령(533건)과 여덟배가 넘는 과징금(약 1,360억원)이 그리고 2000년에는 사상최대의 과징금(약 2,234억원)이 부과되었다(2001년 과징금 부과액은 약 1,632억원).

었다. 세계적인 신용평가회사들이 평가하는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도 위기 이전수준으로 상향조정¹¹⁾되고 있으며, 외국 언론과 투자기관들도 우리의 구조개혁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그 동안의 경쟁정책 집행과 구조개혁으로 인해 우리 경제에 건전한 시장경제의 창달을 위한 기틀이 마련되기는 하였으나, 아직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충분한 조건이 갖추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경쟁정책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경제의 모든 분야에서 시장경쟁의 원리가 충분히 자리잡았다고 볼 수는 없다. 아직 우리 시장은 시장집중도가 높은 분야가 많으며, M&A를 통한 경영 쇄신이나 경쟁을 통한 경영자 선발 등은 아직 시작단계에 불과한 상황이다. 자본, 노동 등 생산요소시장에서도 경쟁의 정도가 미흡하다. 따라서, 앞으로도 모든 분야에서 경쟁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구조적인 개혁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

III. 경제성장 및 발전에 미친 영향

우리나라가 지난 20여년간 운용해온 경쟁정책은 우리 경제의 작동양식과 발전경로에 큰 영향을 미쳐왔다. 경제성장이나 발전에 미친 영향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경쟁정책이 기업의 생산성이

나 경쟁력 또는 1인당 GDP 등에 미친 영향에 대해 통계기법 등을 활용한 수량분석을 시도해 보는 것이 가장 직접적인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서론에서 언급한 바대로 경쟁정책 변수와 거시적 경제성장·발전지표와의 관계를 직접 분석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어렵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경쟁이 경제발전과 관련된 변수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기존의 이론적·실증적 분석의 결과를 그대로 수용하는 입장에서 논의를 시작하고자 한다. 이런 입장에서 보면 경쟁정책을 실시한 결과 목표로 한 경쟁촉진효과를 발생시켰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경제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입증하기에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경쟁정책 집행의 영향으로서 소비자 후생 또는 사회적 후생의 증대효과에 대해서는 사례를 통해 추정하는 것이 다소 용이하므로 이러한 측면에 논거의 많은 부분을 의존할 수밖에 없다. 아래에서는 공정위가 수행해온 경쟁정책을 넓게 보아 독과점 및 카르텔 규제, 경쟁주창(규제개혁) 등으로 구분하여 분야별로 법집행으로 인한 효율성 및 후생증가 효과에 대해 서술함으로써 우리가 추진해온 경쟁정책 수단들이 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미시적 토대를 제공해왔음을 설명하려고 한다.¹²⁾

11) Moody's사는 지난 3월에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2단계 상향조정(Baa2 A3)하였고, Fitch사도 6월에 2단계 상향조정(BBB+ A)한 바 있다.

12) 공정거래위원회가 1987년부터 시행해온 재벌에 의한 경제력집중억제제도의 영향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루지 않는다. 경제력집중억제제도에 대해서는 그 실효성 및 영향에 대하여 논란이 분분하다. 원론적으로는 재벌구조의 비효율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개입하기보다는 시장의 힘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의 금융제도, 경영권시장, 자본시장 등이 성숙하지 못한 가운데에서는 과도기적으로 재벌의 경영구조와 행태의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 출자총액제한, 채무보증제한, 상호출자금지 등으로 대표되는 공정거래법상 경제력집중억제제도는 직접적으로 기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정책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하지만 계열사간 내부거래나 교차보조 등이 존재할 경우 재벌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이는 국가경제의 경쟁력 저하와 함께 위기시에는 경제 전체가 큰 타격을 입을 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이 중요하다. 이런 입장에서 상호채무보증금

1. 독과점시장규제 및 카르텔규제를 통한 경쟁촉진 및 사회적 후생 증진

1) 독과점시장규제를 통한 경제적 효율성 증대

(1) 우리나라의 독과점규제제도

우리나라의 독과점규제제도는 독과점사업자의 행태를 규제하는 시장지배적사업자 지정·고시 및 시장지배적地位 남용행위의 금지가 주요한 부분을 차지해 왔다. 이 제도는 1981년 공정거래법 시행당시부터 도입되어 1999년까지 시행된 우리나라의 독특한 제도로서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매년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지정하고 금지된 시장지배력 남용행위가 발생할 경우에 사후적으로 규제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법 위반행위가 있을 경우의 행태를 규제하는데 치중한 결과 독과점시장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러한 문제인식 하에 독과점시장구조 자체를 보다 경쟁적인 구조로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6년

부터는 독과점시장구조 개선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해왔다. 한편 1999년 공정거래법 개정시에 시장지배적사업자 사전지정제도를 폐지하고 개별 사건 조사시에 실질적인 시장지배력 유무를 판단토록 제도를 변경하였다.

기업결합(M&A)규제제도는 독과점의 형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경쟁정책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행한 그동안의 법집행 실적을 보면 1981년부터 2000년까지 총 5,506건의 기업결합을 심사하였으나 경쟁제한성을 인정해 시정조치를 취한 것은 13건에 불과하고 그중 금지명령을 내린 경우는 4건밖에 없다. 13건의 시정조치 중 9건이 외환위기 이후에 이루어진 것을 보면 이시기 이후에 기업결합에 대한 규제정책이 적극적으로 집행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¹³⁾

(2) 산업집중도의 완화 추세¹⁴⁾

지난 20여년간 꾸준히 진행되어온 무역 및 투자의 자유화와 경쟁정책의 집행에 힘입어¹⁵⁾ 우리

〈표1〉 광공업 부문의 산업평균집중도 변화

년도	1980	1990	1995	1997	1998	1999
CR3 (%)	62.4	52.8	47.8	48.6	50.0	45.4

지, 출자총액제한제도, 부당내부거래조사 등의 재벌시책들은 그간 재벌의 무분별한 선단식경영이 심화되는 것을 막는데 상당한 기여를 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안정성을 높이고 장기적인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효과를 거두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최근에 채무보증이 근절되고 부당내부거래가 억제됨에 따라 재벌내의 계열사간 독립경영의 풍토가 자리잡아가고 있는 것만 보아도 이러한 결론을 내리기에 충분하다.

13) 공정위가 지난 20여년간에 행한 기업결합규제실적을 보면 독과점 방지를 위해 큰 영향을 미쳤다고 말하기는 힘들 것 같다. 하지만 기업결합심사제도라는 사전적 구조규제의 존재 자체가 독과점화를 가져올 기업결합의 시도를 사전에 억제함으로써 독과점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데에 어느 정도 기여해왔다고 평가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14) 산업집중도가 악화될 경우에 사회적 후생과 효율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은 아래의 실증연구 사례부분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다.

15) 물론 시장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서 경쟁정책 이외의 다른 여러 가지를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경쟁정책은 시장구조의 개선을 통한 경쟁촉진을 일차적 목표로 하므로 다른 어떤 요인보다 시장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요인이라고 추정해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이다.

나라 시장은 전반적으로 점차 경쟁적인 구조로 변화하고 있다. <표1>에서 보듯 우리나라 광공업 부문의 산업집중도는 공정거래법이 제정된 이후 지금까지 전반적으로 완화되는 추세를 보여왔다. 1997년부터 시작된 경제위기는 광공업부문의 사업활동을 위축시키고 업체수도 줄이는 효과를 가져와 1997~98년은 산업집중도가 일시적으로 악화되었다. 그러나 1999년에는 경제위기 이전보다 더 좋은 모습으로 개선된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특히 경제위기 이전과 비교하여 산업별로 업체수가 줄어든 상황에서 나타난 현상이기 때문에 경제위기 이후 우리 시장의 경쟁구조가 크게 개선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2>는 산업별 집중도를 여러 구간으로 구분하고, 각 구간별 산업수와 출하액 및 이들의 비중이 표시되어 있다. 이에 따르더라도 우리나라 광공업 부문의 산업집중도가 1980년 이후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표를 보면 추세상으로 집중도가 높은 구간의 산업비중은 줄어들고 집중도가 낮은 구간의 산업비중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3) 독과점규제의 효율성증대효과에 관한 실증연구사례

① 사회적 후생손실 감소효과

독과점시장의 가격이 경쟁시장의 가격보다 높은 수준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경제학에 있어서 상식적인 결론이다. 독점적 시장구조하에서는 기업들이 시장지배력을 이용해 가격을 용이하게 인상할 수 있다. 또한 생산자가 소수이므로 서로간에 담합이 용이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가격을 함께 인상하거나 인하하는 것을 막을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되면 경쟁시장에 비해 적은 양이 생산되어 더 높은 가격에 소비해야 되므로 사회적 후생의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한 경쟁이 유발하는 기술혁신을 통한 효율성 증대를 기대하기가 어렵게 되므로 경제발전에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많아진다.

전영서(2002)는 과거 정부주도의 고도성장과정에서 형성된 우리나라의 독과점적 시장구조가 초래한 사회적 비용효과를 계량적으로 분석하여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1981년부터 1998년까지 22개 제조업에 대해 사회후생손실을 계산한 결과에 따르면, 1995년 기준으로 금액면에서 사회적 후생손실이 약 12.5조원(GDP 대비 약 3.31%)으로 미국이나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년도별 사회

<표2> 집중도 계층별 산업수 및 출하액

(단위: 개, %)

집중도(CR ₃) 계층	1980	1990	1995	1997	1998	1999
0.20미만	18 (4.3)	89 (15.0)	91 (15.2)	88 (14.7)	87 (14.7)	92 (19.0)
~0.50미만	133 (32.1)	214 (36.1)	259 (43.3)	268 (44.7)	258 (43.6)	222 (45.8)
~0.70미만	93 (22.5)	107 (18.0)	111 (18.6)	102 (17.0)	92 (15.5)	65 (13.4)
~0.90미만	85 (20.5)	84 (14.2)	69 (11.5)	67 (11.2)	79 (13.3)	55 (11.3)
0.90이상	85 (20.5)	99 (16.7)	68 (11.4)	74 (12.4)	76 (12.8)	51 (10.5)

적 후생손실 규모를 살펴보면, 1981년에는 GDP의 8.45% 수준이었다가 1985년에는 7.07%, 1990년에는 4.87%, 1995년 3.31%, 1998년에는 3.36%로서 독과점시장구조로 인한 사회적 후생손실의 감소 추세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후생손실규모의 감소추세는 무역 자유화와 같은 요인에 의해서도 일부 설명될 수 있겠으나, 무엇보다도 1980년대 초부터 우리 정부가 경쟁정책을 도입하여 국내시장의 경쟁제한적인 시장구조와 행태를 꾸준히 시정하면서 경쟁을 유도해온 결과로써 상당부분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의 결과를 달리 해석한다면, 그 동안의 독과점시장개선정책이 우리나라 시장구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경제적 후생을 꾸준히 상승시키는 효과를 거두었다고 말할 수 있겠다.¹⁶⁾

② 독과점사업자 지정제도의 소비자 후생 증대 효과

김봉호·문인철(1999)은 독과점 사업자(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정과 독점적 행위의 규제가 경쟁촉진과 소비자후생에 얼마나 기여했는가를 Lerner 지수¹⁷⁾를 측정하여 추정하였다. 1981년부터 1997년까지 6~12년 동안 독과점 사업자

가 지정된 품목 9개를 선정하고 각각에 대한 대표적 사업자를 뽑아서 이를 기업이 독과점사업자로 지정되지 않았을 때의 Lerner지수와 지정된 기간의 Lerner지수를 측정하였다.

측정결과 9개 품목 모두에 있어서 독과점 미지정시의 Lerner지수가 독과점 지정시의 Lerner지수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공정거래법에 의한 독과점 행위규제 실적은 미미한 수준에 머물렀으나,¹⁸⁾ 독과점사업자로 지정될 경우 사후규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간접적인 규제효과를 발생시켜 독점을 약화시키고 시장을 경쟁화하는데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독과점 사업자의 초과이윤을 감소는 곧 소비자후생의 증가를 의미하고 효율적인 생산을 유도하여 지속적인 경제발전에 기여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다.

2) 카르텔 규제를 통한 시장경제 발전의 견인

(1) 카르텔의 폐해

독과점 업체들이나 사업자단체에 의해 행해지는 카르텔은 시장에서 결정되어야 할 가격이나 공급량을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결정하는 행위로서 시장원리의 작동을 근원적으로 봉쇄하는 심각한 경쟁제한행위이기 때문에 경쟁정책의 가장

16) 경쟁이 양적인 측면의 경제발전, 즉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두기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첫째는 정태적 효과(static effect)로서 시장이 완전경쟁에 가까워질수록 가격이 한계생산비용에 접근하여 일회적으로 생산과 소비가 사회적 후생을 극대화하는 수준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측면을 말한다. 둘째는 동태적 효과인데 경쟁이 기업의 혁신을 유도하고 보다 효율적인 기업이 살아남도록 유도함으로써 지속적으로 경제적 부를 증대시키는 측면을 가리킨다. 따라서, 여기서 언급한 사회적 후생증대 효과는 시장구조의 개선과 이로 인한 경쟁이 정태적 의미에서 독과점구조가 초래하는 사회적 손실을 감소시켜 경제적 부를 증대시키는 전자의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다.

17) Lerner Index는 독점력과 사회후생효과를 측정하는 가장 전통적인 수단으로 가격이 한계생산비용을 어느정도 초과하여 형성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수이다. 러너지수는 0에서 1사이에 분포하고 높을수록 독점력이 크고 낮을수록 완전경쟁에 가까운 상태를 가리킨다.

18) 1981~2000년중에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해 총 3,013건의 시정조치를 취하였는데, 이 가운데 23건 만이 시장지배적 지위남용에 대한 것이었다. 같은 기간중 부과된 과징금 액수로 보면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에 대해 약 35억원이 부과되어 전체의 0.6%에 불과하다(성소미·신팽식, 2001).

강력한 규제대상이 되고 있다. 공동행위는 참여 사업자들에게는 초과이윤을 제공해주지만 사회적으로는 독점시장 상태와 같은 비효율과 사회적 후생손실을 가져온다. 따라서 카르텔을 적발하여 시정하거나 사전에 예방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소비자의 이익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나아가 독과점구조가 고착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시장경쟁을 회복하여 동태적인 경제의 효율성증진이 가능하도록 하므로 국가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겠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과거 개발연대의 잔재로서 합법적 카르텔이 상당히 존재하였고 독과점적 시장구조로 인해 담합행위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져온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카르텔을 규제하는 것이 큰 의미를 갖는다.

(2) 카르텔에 대한 규제와 법집행의 경제적 효과
공정위는 이러한 카르텔을 차단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특히 1990년대 중반이후에 법집행 실적이 현저히 증가하였다. 우선 공정위는 산업합리화나 불황극복 등을 이유로 한 카르텔을 인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나 이를 매우 제한적으로 행사해온 결과 현재 인가를 받아 시행되고 있는 카르텔은 없다. 사업자단체에 의한 금지행위 시정조치는 제외한 채 독과점업체들에 의한 부당 공동행위에 대한 시정실적만을 살펴보면, 1981년 법시행 이후부터 2001년까지 시정명령 이상(과징금부과 및 고발포함)이 215건, 시정권고는 44건이 조치되었다. 부당 공동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기 시작한 1988년부터 2001년까지 총 3,144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되었으며, 이중 약 93%가 1998년 이후에 부과된 것이다. 경고조치 115건을 합할 경우에 총 374건이 적발되어 건수면에서 선진외국의 사례에 비

추어 보아 엄청난 규모로서 이는 우리나라에서 사업자들간에 부당한 공동행위 즉 담합이 얼마나 빈번히 발생해왔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이를 일면 달리 해석한다면 공정위가 그 동안 경쟁정책집행을 통해 상당 정도로 카르텔을 규제하는데에 성공함으로써 국민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할 여지도 있다. 특히 1990년대 들어서는 법개정을 통해 적발건수와 처벌수위가 꾸준히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법집행이 카르텔을 예방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대부분 교묘하고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카르텔을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위하여, 신고자 또는 증거제공을 통해 조사에 적극 협조한 자에 대한 면책제도(Leniency Program)를 도입하여 운용하고 있다. 또한, 금년부터는 카르텔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카르텔을 신고한 경우에 최고 2000만원까지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운용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카르텔의 규제가 국민들의 실제 경제생활에 얼마나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대표적인 카르텔 사건들을 예로 들어 설명한다.

3개 교복제조업체의 부당 공동행위 시정(2001. 5)

공정위는 시장의 약 50%를 점유하고 있는 3개 교복제조업체들이 교복판매 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하여 판매한 이 카르텔 행위에 대하여 중지명령과 함께 총 11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하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였다. 한편 이 카르텔의 적발로 인해 기대되는 소비자의 부담절감액은 연간 약 600억원으로 추정¹⁹⁾되었는데, 이는 카르텔이 소비자의 후생에 얼마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카르텔을 예방하고 적발하는 경쟁정책적 조치가 자원배분의 왜곡을 시정하고 소비자후생

을 증대하는데 얼마나 크고 실질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인지를 잘 보여주는 사건이다.

공공건설공사의 입찰담합 시정

공정위는 1994년에 백제교 공사입찰을 비롯하여, 1996년 철도차량구매, 1999년 서해안고속도로 등 3개 공공건설공사 입찰건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하여 엄중한 제재조치를 함으로써 오랜 기간 관행화된 업계의 담합관행을 불식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1998년부터는 공공공사의 입찰관련 상시정보수집체제를 구축·운영하여 감시를 강화하였다. 결과적으로 공사비용이 매년 약 20~30조원에 이르는 공공건설공사의 입찰에서 경쟁이 정착되기 시작하였고, 평균낙찰률이 1997년에는 87%에서 2000년 중반에는 75%로 낮아짐에 따라 매년 절감되는 예산액만도 약 4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사례도 카르텔이 국민경제에 어떻게 부담을 가중시키고 효율을 떨어뜨리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위의 사례들에서 보는 것처럼 카르텔은 유효한 경쟁이 존재할 경우의 정상적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설정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막대한 경제적인 피해를 입힌다. 따라서 카르텔을 규제함으로써 시장에 경쟁을 확보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소비자의 이익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 이런 의미에서 그간에 우리나라에서 공정위의 카르텔 시정성과를 통해 소비자에게 돌아

간 경제적 이익의 크기를 추산해 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편의상 그간에 과징금이 부과되었던 카르텔 사건에서 관련시장 총매출액의 10%를 카르텔로 인한 소비자 피해의 크기¹⁹⁾이며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에 평균적으로 카르텔이 존재한 기간(평균 1년으로 가정)동안 관련시장 매출액의 1%가 부과되었다고 가정한다. 그렇다면 2001년까지 부당공동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이 총 3,144억원이므로 카르텔이 존재한 기간동안의 관련시장 총매출액은 31,440조원이고 이중 카르텔로 인해 소비자들이 추가로 부담한 규모는 약 3조원에 달한다고 추산 할 수 있다. 만일 적발되지 않았을 경우 평균적으로 향후 1년간 더 카르텔이 유지되었을 것이라고 가정한다면 약 3조원이 공정위의 카르텔 규제활동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돌아간 이익의 크기라고 추정할 수 있다. 물론 공정위가 경고이상의 조치를 취한 부당 공동행위 사건이 2001년까지 총 374건에 달하고 그중 과징금이 부과된 건은 불과 84건에 불과하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이 추계치는 실제효과에 비해 상당히 낮게 평가된 수치라고 할 수 있다. 다만, 과징금의 약 93%가 1998년부터 4년간 부과된 것임을 고려한다면 이 기간동안 공정위가 카르텔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돌아간 이익의 크기가 적어도 약 3조원에 이른다고 추정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이다.

19) 동 교복카르텔 사건 시정조치 이후에 실제로 시장조사를 해본 결과, 동복의 경우 해당 대기업(3사)의 제품이 175,000원에서 145,000원으로, 다른 중소기업제품은 155,000원에서 125,000원으로 인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하복의 경우는 5만원에서 4만원 수준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동 카르텔의 해체로 소비자에게 돌아간 연간 소득이전효과를 대략 추산해보면, 동복(3만원×150만벌=450억원)과 하복(1만원×150만벌=150억원)을 합하여 총 600억원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다.

20) 미국의 경우 카르텔 업체에 대한 벌금크기를 산출함에 있어서, 매출액의 10%를 통상 카르텔로 인한 업체의 부당 이익의 크기로 보고 있다. 또한, 실제 소비자피해는 가격인상으로 인해 구매를 포기하게 되는 소비자들의 피해까지 고려하여 이보다 더 클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소비자 피해규모를 매출액의 10%로 가정하나 실제 피해규모는 이보다 상당히 높을 가능성이 많다.

2. 규제개혁을 통한 경제적 효율성 및 후생의 증대

1) 경쟁당국의 경쟁주창활동과 규제개혁

경쟁주창역할(competition advocacy role)[1]란 경쟁당국이 경쟁촉진적인 환경을 조성하여 좀더 경쟁적인 산업구조와 기업행태를 조장하려는 목적으로 정부의 각종 법령개정이나 규제제도에 대해 조언을 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개도국에서는 아직 경쟁문화가 정착되지 못한 나라들의 경우에는 경쟁정책의 필수적인 요소로 여겨지고 있다. 이것은 과거 정부주도의 경제운영과정에서 확산된 경쟁제한적인 제도나 관행을 제거하는 것이 시장경제로의 이행을 완성하고 지속적인 경제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핵심과제이기 때문이다.

규제개혁은 경쟁당국의 본질적 기능의 하나로서 가장 중요한 경쟁주창의 수단이 되고 있다. 규제개혁의 목적은 경쟁제한적인 정부의 규제^[21]들을 개선함으로써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기업의 기술혁신과 창의적 활동을 조장하여 경제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규제는 정부에 의한 인위적인 진입장벽의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경쟁을 제한하는 정부규제를 개혁함으로써 협존하는 기업들에게 경쟁 압력을 가하여 스스로 생산성 증대와 기술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도록 유도한다. 아울러 기업에 의한 새로운 재화나 서비스의 개발을 촉진하여 소비자의 선택범위를

넓혀주고, 가격과 품질에 영향을 미쳐 소비자 후생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처럼 규제개혁은 경쟁을 촉진하여 장기적인 경제성장이나 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측면에서 경쟁정책과 공통된 효과와 목적을 가지고 있다.

2) 공정위의 규제개혁노력과 성과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정이후부터 줄곧 정부 내에서 경쟁주창기능을 수행하며 공적인 경쟁제한, 즉 경쟁제한적 정부규제의 확산을 막고 시장 경제의 영역을 확대함으로써 경제발전을 촉진하는데 기여해왔다. 경쟁제한적 법령에 대한 사전 협의제도를 활용하여 경쟁제한적 규제의 형성을 방지하는 역할을 해왔으며, 정부차원의 규제정비작업을 주도함으로써 기존의 경쟁제한적인 제도와 관행을 상당부분 철폐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한편, 1999년에 제정된 카르텔일괄정리법의 성과도 이러한 규제개혁차원의 경쟁주창활동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1) 사전법령협의를 통한 경쟁제한적 규제의 차단

경쟁제한적 규제를 사전에 예방할 목적으로 공정거래법 제63조에는 정부기관이 경쟁을 제한하는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거나 같은 성격의 행정처분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공정위와 협의토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는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우리나라의 독특한 경쟁주창

21) 경쟁제한적 규제란 공급자의 수, 제품 또는 서비스의 가격, 생산량 등 시장기능에 의해 결정되어야 할 변수에 정부가 직접 개입하여 경쟁을 저해하는 규제를 의미한다. 각종 인허가제, 자격제, 요금규제, 영업활동영역의 제한 등이 이에 포함된다. 산업전반에 혼재된 경쟁제한적 규제는 개별기업들의 체질을 약화시키고 산업전체의 고비용, 저생산을 초래하여 사회적 비효율과 소비자후생의 저하를 초래한다. 아울러 규제로 인한 특혜와 이권이 발생하여 각종 부정비리의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제도로서 1981년 법제정시부터 도입되어 그동안 정부의 경쟁제한적 규제나 정책의 신설을 차단하는데 상당한 성과를 거두어왔다. 사전법령 협의 과정에서 공정위는 주로 진입제한, 가격결정, 지역제한, 카르텔행위, 수입독점권 부여,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등을 검토해서 개선의견을 제시해왔다. 운영실적을 보면, 1991년부터 2001년까지²²⁾ 각 정부기관이 법령을 제·개정하면서 공정위와 사전에 협의한 건수는 총 3,654건이며 공정위는 이중 12.4%에 해당하는 654건에 대해 규제적 조항을 삭제 또는 변경하라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이중 581건(72%)이 반영되었다. 특히 공정위의 독립성과 위상이 높아지면서 점차 타 기관에서 공정위의 의견을 수용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2) 기존 정부규제의 혁신

한편, 공정위는 일찍부터 규제개혁을 경쟁당국 본연의 임무로 인식하고 설립이후부터 현재까지 경쟁을 제한하는 각종 법령과 제도들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주도해 왔다. 1987년부터 정부내에서 최초로 규제완화(deregulation)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하였으며, 산업별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작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이때 산업별 경쟁제한 실태를 조사하여 선정된 18개 산업에 대한 규제완화 작업을 추진하였다. 1990년대에 들어서도 공정위는 '경제행정규제완화위원회(1993)', '경제행정규제개혁위원회(1996)' 등의 운영에 관여하면서 우리 정부의 규제개혁 노력을 선도하였다.

공정위는 1997년부터 1998년까지 '경제규제개혁위원회'의 운영을 맡아서 경제분야 규제개

혁의 총괄기능을 담당하기도 하였다. 이기간 중 경제규제개혁위원회는 규제가 많고 국민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정보통신, 산업입지 및 공장설립, 물류, 유통, 건설 등 11개 핵심분야에 대한 진입제한, 가격규제, 영업활동 제한 등을 획기적으로 정비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때 공정위는 규제개혁 과정에서 제3자적, 중립적 위치에 있는 기관으로서 특정 이해집단의 반발을 극복하면서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였다. 특히 IMF자금지원이라는 경제위기 상황하에서 이러한 규제개혁과제의 성공적인 추진은 우리경제가 경쟁촉진적 시장경제체제로 발전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고 할 수 있다.

1998년부터 규제개혁업무가 '규제개혁위원회'로 일원화된 이후에도 공정거래위원회는 규제개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활동하며 규제개혁과정에서 경쟁정책적인 시각이 반영되도록 꾸준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때부터 공정위는 경쟁제한적 규제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하여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하는 방식으로 규제개혁 작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3) 규제개혁의 사례와 경제적 효과

(1) 공정위가 추진한 규제개혁의 사례 전문자격사의 보수기준 폐지

1999년 초에 이루어진 카르텔일괄정리법²³⁾의 제정·시행은 공정위에 의해 추진된 규제개혁 가운데서 가장 독특하고 두드러진 성과를 가져온 업적으로 기록될 만한 것이다. 이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개별 법령에 근거해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던 가격카르텔, 생산량제한, 판매지역 분

22) 1981~1990년 기간중에도 약 400건의 사전협의 실적이 있으나 개선의견 제시 및 반영 건수는 파악되지 않음.

할 등과 같은 20개의 카르텔이 일거에 정비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 예로서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9개 전문자격사의 보수기준²⁴⁾이 폐지된 것을 들 수 있다.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자격사의 보수수준 변화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공개해 왔다. 그 결과에 따르면, 보수기준폐지 이전과 비교해 보수의 최고액과 최저액간의 편차가 심화되는 현상이 뚜렷하게 발견되었는데, 이는 서비스의 질에 따른 보수수준의 차별화 현상으로 해석된다. 보수자율화 초기에는 일부 자격사의 경우 보수가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기도 하였으나, 대부분 전문자격사들의 보수수준이 계속 하락하거나 안정화되는 추세가 발견되었다. 변리사의 보수를 예로 들면, 보수기준 폐지 이후 2000년 하반기까지는 보수수준이 상승하였으나 2001년 12월 조사결과는 특허출원관계 보수가 2000년 하반기에 비해 평균 10.2%가 하락하였다. 변호사의 경우에는 보수기준 폐지 이후 보수수준이 꾸준히 하락하고 있다. 1999년 하반기 456만원, 2000년 상반기 435만원, 2001년 하반기 407만원, 2002년 평균 보수는 385만원으로 꾸준히 하락하고 있다. 공인회계사의 보수수준도 자율화 이후 점진적으로 하락을 지속하고 있는데, 회계감사업무의 경우 2001년 하반기 보수수준이 98년에 비해 평균 9.9%가 하락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보수기준이 폐지된 이후 가격경쟁의 효과가 가시화 되고 적정보수가 새로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

된다. 또한, 여러 차례 보수실태를 조사하여 공개한 결과 소비자의 선택정보가 늘어나서 전문자격사들간에 실질적인 경쟁이 정착되고 있는 증거로 볼 수 있다.

통신시장의 진입 및 가격규제 완화

공정위는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1990년부터 진입규제와 가격규제를 완화하여 통신시장을 경쟁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 결과 우리나라 통신산업은 90년대 후반부터 신규 사업자들이 속속 진입함에 따라 각 서비스 영역에서 경쟁체제가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1998년에는 전화요금을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어 사업자간 경쟁이 활발해지도록 유도하였다. 그 결과 요금과 서비스 질 측면에서 큰 효과를 가져왔다. 전반적인 통신서비스 요금이 1995년부터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시외전화와 국제전화요금이 모두 50% 이상 크게 하락하였다. 특히 정보통신산업이 산업전반의 경쟁력제고에 미치는 역할을 고려한다면 이 부문의 규제개혁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가 대단히 클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주유소 및 맥주시장 진입규제 폐지

1995년에 공정위가 당시 산업자원부와 협의하여 주유소 진입규제를 철폐한 결과 주유소들이 가격과 서비스경쟁을 벌이기 시작하였다. 그 이전에는 주유소마다 가격이 동일하였고 주유소 숫자도 충분치 못해 소비자들이 많은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한편, 2001. 8월에 공정위는 재정경제부와 협의하여 맥주의 생산시설을 일정규모 이상으로 제한하던 규제를 완화하여 소규모 생산자

23) 공식 명칭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이 제외되는 부당한 공동행위 등의 정비에 관한 법률(법률 제5815호, 1999. 2. 5 공포)”이다.

24) 기준에는 해당 사업자단체가 정한 기준수수료를 주무관청의 인가한 결과 서비스의 질과 무관하게 일률적인 보수수준이 유지되고 있었다.

들도 맥주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결과로 소비자들은 다양한 맛의 맥주를 즐길 수 있게 되었고 맥주시장의 경쟁은 한층 강화되게 되었다.

(2) 규제개혁의 경제적 효과 분석 사례

이론적으로 규제개혁이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 여러 가지 경제성장 지표들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것은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어렵지 않게 추론이 가능하다. 그러나 규제나 규제완화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실증적 분석은 거의 전무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1998년 이후에 규제개혁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를 가정하여 향후 우리경제의 거시변수들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 연구의 결과를 본고의 논거로서 인용하고자 한다.

하병기 외(1999)는 수량분석을 통하여 1998년에 시행하기로 한 주요 규제개혁 조치의 효과를 고용증대효과, 국민부담경감, 정부비용절감의 세 가지 항목으로 분류하여 그 편익을 분석하였다. 분석한 규제는 30개 정부부처가 소관하고 있던 324건의 주요 규제에 대한 개혁조치로서 수적으로 볼 때 1998년 전체 규제정비 건수 7,841건의 4.1%에 해당하였다. 편익 추산결과 1998년에 시행한 주요 규제개혁 조치는 1999년 이후 2003년까지 최대 107만 여개의 일자리(1997년 경제활동인구의 4.9%)를 창출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계되었다. 같은 기간동안 민간이 규제를 지키기 위해 지불해야하는 시간의 기회비용과 실제비용은 약 18조 6천억원을 절약 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였는데, 이는 1997년 GDP의 4.4%에 해당하는 규모로서 이러한 비용 절감분이 경제활동에 투입될 경우 우리 경제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다만 이러한 분석결과는 당시의 규제개혁을 위한 결정 사항이 차질 없이 효율적으로 시행된다는 전제 하에서 추정된 것이므로 일정한 한계가 있다.

또한, 동 연구에서는 전력, 통신, 건설, 유통, 도로운송 등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5개의 서비스산업을 대상으로 규제개혁이 가져올 거시경제적 효과의 분석을 시도하였다.²⁵⁾ 그 결과 동 5개 산업에서 규제개혁이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질 경우, 우리경제 전체의 노동생산성과 자본생산성이 각각 4.3%와 4.8% 상승할 것으로 추산되었으며, 특히 통신산업만을 고려할 경우 노동생산성이 15%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생산자가격은 분석대상 산업의 비용하락뿐만 아니라 여타산업의 비용도 낮춤으로써 2.21% 낮아질 것으로 추정하였다. 또한, 규제개혁에 의한 모든 충격들의 종합적인 효과를 살펴본 결과 10년후에는 실질GDP가 8.57%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였다. 이는 연평균 성장률이 0.64% 높아지는 효과에 해당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 규제개혁이 경제성장과 활력에 미치는 효과가 매우 크다는 것을 가리킨다.²⁶⁾

IV. 시사점

한국은 과거 1960~70년대에 정부가 경제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보호와 규제를 통해 직접 자원을 배분하는 정부주도의 수출지향적 경제개발 전략을 추진하여 세계가 주목할 만한 성장을 달성하였다. 그러나 이 시기동안 시장원리의 왜곡에 의해 야기된 독과점적 시장구조와 구조적 비

25) 이들 5개 산업은 1995년 기준으로 한국 GDP의 약 24.1%를 차지하였고, 고용면에서는 27.5%를 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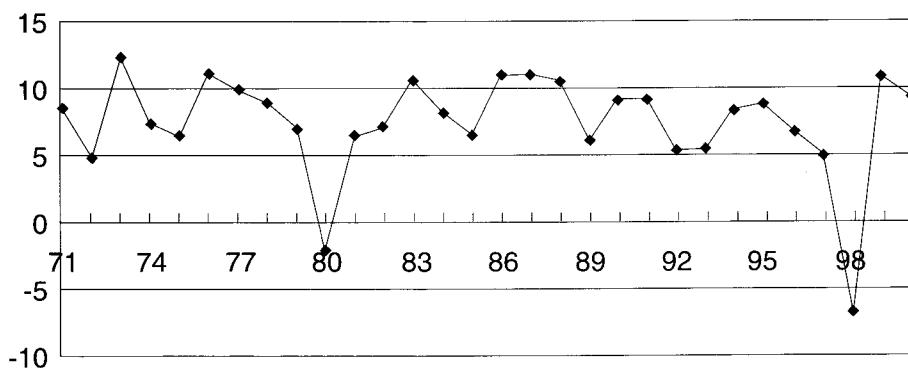
효율이 우리경제를 괴롭히기 시작하였으며, 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1981년에 경쟁법을 도입하였다. 그때부터 공정위는 경제전반에 경쟁 원리를 확산시키고 우리 경제를 국경 없는 무한 경쟁의 시대에서 성공할 수 있는 강한 체질로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하였고 일정한 성과도 거두었다. 그러나 우리 정부와 기업은 시장원리에 기반한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오랫동안 외면해온 결과 1997년의 외환·경제위기의 발생으로 혹독한 구조조정의 시기를 보내야만 했다. 그 결과 한국은 빠른 속도로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경제의 활력을 되찾아가고 있다.

본문에서 살펴본 대로, 한국의 경쟁정책은 지난 20여년간 독과점시장의 규제, 카르텔의 차단, 규제개혁으로 대별되는 경쟁주창활동 등을 통해 경제의 전반에 경쟁원리를 심고 경쟁을 촉진하는 데에 일정한 성과를 거둠으로써 사회적 후생의 증진과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크게 기여해 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경쟁의 촉진과

규제의 개혁에 따른 기술혁신 및 생산성 향상은 경제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으로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요소투입의 증가 또는 수요의 확대에 의한 성장효과와는 질적으로 구별된다. 생산요소의 투입증대나 수요의 확대를 통해서는 지속적인 경제성장효과를 기대할 수 없으나, 기업들이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는 미시경제적 환경을 마련해주 는 정책들은 생산성 향상과 경제적 효율성 증대를 통해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가능하게 한다. 이런 점에서 경쟁정책이 한국의 경제성장과 발전에 미친 효과의 의의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의 경쟁정책은 고도경제성장 과정에서 외부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내부의 구조적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하여 시장경제시스템을 받아들이는 과정과 맞물려 현재까지 진화해왔다. <그림 1>은 1970년대 이후 30년간 우리나라의 연도별 GDP성장을 변화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 그림은 한국이 전반적으로 매년 10%를 넘나드는 높

<그림1> 연도별 GDP 성장을 추이



26) 물론 이러한 효과는 규제개혁이 효율적으로 지속되고 거시경제정책 및 구조조정정책 등과 적절히 조화될 때를 가정하고 분석한 결과라는 한계가 있다.

은 성장을 지속하였으나 두 번의 뚜렷한 위기상황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첫 번째는 1980년으로 이때 우리정부는 경제운영의 원리로서 시장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정책기조를 전환함과 아울러 공정거래법을 도입하였다. 두 번째 위기는 1997년 말의 외환위기로 시작되었다. 이때에도 우리정부는 위기의 근본원인이 시장의 미성숙으로 인한 구조적 결함에 있음을 자인하고 시장경쟁의 원리를 확산시키는 방향으로 광범위한 구조조정을 실시하였고 아울러 경쟁정책 제도와 법집행이 대폭 강화되었다.

이와 같이 한국은 위기가 닥쳤을 때마다 과거로 뒷걸음질하지 않고 시장시스템과 경쟁정책을 한층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혁의 방향을 설정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따라서 경쟁정책은 우리나라가 짧은 기간내에 경제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하였으며 이후에 높은 경제성장과 발전을 지속할 수 있게 한 원동력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아직 일부 개발도상국들은 경쟁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자국의 경제발전을 위해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한 나라가 성공적으로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시장의 효율성에 대한 확고한 신뢰를 바탕으로 경제개발의 초기단계에서부터 경쟁원리에 보다 많이 의존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유리하다는 확신을 갖게 된다. 과거에 한국과 같은 나라들이 경쟁정책이 없는 가운데에서도 경제개발에 성공하였다는 것에서 길을 찾으려 해서는 안 된다. 오늘날의 세계경제환경이 과거와는 너무도 다르게 변화되었기 때문이다. WTO체제의 정착으로 과거 GATT체제에서 묵인되어온 정부의 지원과 보호조치들이 장기간 유지되기 힘든 환경이 조성

되고 있다. 또한 무역 및 투자 자유화의 진전과 기업활동의 세계화는 세계시장이 하나의 공정한 경쟁의 장으로 통합되는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경제개발의 초기단계에서는 정부가 경제발전을 위해 많은 부분 개입하는 것이 어느 정도 불가피하며 또한 선진국 수준의 경쟁법 체제를 갖추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경쟁법·정책을 도입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볼 때 빠를수록 유리하고 경쟁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강화해 나가는 것은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한 필수조건이라는 사실이다. ■**공정**

■참 고 문 헌■

-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백서, 2000·2001·2002.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경제 창달의 발자취(공정거래위원회 20년사), 2001.
 김봉호·문인철, “독과점 규제정책의 성과에 관한 연구”, 「강남대논문집(상경대학)」 32(98.12), pp.75-90.
 성소미·신광식, 공정거래정책 20년: 운용성과와 향후과제, 한국개발연구원(KDI) 정책연구시리즈 2001-12.
 신광식, “경제위기와 경쟁법·정책”, KDI정책연구, 제20권 제1·2호, 1998.
 전영서, “우리나라 독과점 시장구조에 대한 후생효과 분석”, 산업조직연구, 2002년 3월, 57-77.
 하병기 외, 규제개혁의 경제효과 분석, 산업연구원, 1999.
 한국개발연구원, 시장분석기법 및 경쟁지표, 1999 공정거래위원회 정책연구개발사업, 1999. 12.
 한국개발연구원, 시장구조 조사공표, 2001.
 혀선, “경쟁이 경제발전에 미치는 영향”, 질서경제대토론회 논문집, 한국질서경제학회, 2002.
 Dutz, Mark A. & Aydin Hayri (1999), “Does More Intense Competition Lead to Higher Growth?” CEPR, Discussion Paper, No. 2249.
 M.E. Porter (2000). “The Current Competitiveness Index: Measuring the Microeconomic Foundations of Prosperity”,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00-2001, World Economic Forum, pp.40-58.